

수수료 부과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

2009. 02. 04 제정

2014. 07. 14 개정

2016. 10. 10 개정

제 1 조 (목적)

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 58 조에 의거 인벡스자산운용주식회사(이하 "회사"라 한다)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, 정당한 사유 없는 투자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범위)

수수료의 부과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, 법 시행령, 법 시행규칙, 금융투자업 규정, 및 금융투자업 규정 시행 세칙 등(이하 "관련법규"라 한다)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3 조 (용어의 정의)

이 기준에서 "수수료"라 함은 집합투자기구 및 일임자문자산에 적용되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로서 아래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.

① 보수 -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하는 집합투자재산의 판매,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로서 그 종류는 아래와 같다.

1. 집합투자업자보수 :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
2. 판매회사보수 :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
3. 신탁업자보수 :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자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
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: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의 계산 등을 제공한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
5.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보수 :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집합투자기구를 평가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업무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

② 수수료 - 투자자가 부담하는 집합투자재산 및 일임자산·투자자문재산의 판매,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수수료로서 그 종류는 아래와 같다.

1. 판매수수료 :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집합투자증권 판매의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수수료를 말하며 수수료 지불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
2. 환매수수료 : 투자자가 집합투자규약에 정한 기간 이전에 집합투자기구를 환매할 경우 부과하는 수수료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안정성과 환매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집합투자기구 재산에 편입된다.
3. 투자일임수수료 : 회사가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하는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
4. 투자자문수수료 : 회사가 투자자의 자산운용을 위한 자문의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
5. 성과보수 : 투자일임자산의 성과에 연동하며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투자자로부터 기본보수 외에 추가로 받는 수수료

제 4 조 (수수료의 부과기준)

① 회사는 수수료 부과에 있어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수수료는 운용자산의 특성,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, 투자자의 투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책정되

어야 한다.

제 5 조 (수수료 체계)

① 투자자는 회사와 투자자문 계약 또는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수수료 지급방식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으며,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회사의 수수료 정책을 기본으로 투자재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1. 기본보수만 지급(이하 이 조에서 "기본형보수"라 한다)
2. 기본보수와 성과보수를 지급(이하 이 조에서 "혼합형보수"라 한다)
3. 성과보수만 지급(이하 이 조에서 "성과형보수"라 한다)

② 혼합형보수 또는 성과형보수의 경우 운용성과가 기준지표 등의 성과를 초과하더라도 해당 운용성과가 부(負)의 수익률을 나타낼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받지 아니한다.

제 6 조 (수수료의 부과절차)

① 수수료 수준은 운용자산의 특성, 포트폴리오의 규모, 요구 되어지는 서비스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개별투자자 기준으로 회사의 경영진이 결정한다.

② 회사는 관련 법규에서 수수료에 대해 정하는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③ 회사는 집합투자규약상의 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집합투자기구의 판매회사,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거래 상대방 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.

④ 투자일임수수료 및 투자자문수수료의 경우 관련 법규에서 달리 정하는 사항이 없는 한 투자자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투자일임계약서 및 투자자문계약서에 수수료계산방법, 수수료계산기간 및 수수료 지급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.

제 7 조 (수수료의 설명의무)

회사는 법 제 47 조 1 항 및 동법 시행령 53조에 의거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.

제 8 조 (수수료의 고지)

회사는 법 제 99 조 1 항 및 동법 시행령 100조에 의거 일반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투자일임보고서에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 9 조 (공시)

회사는 법 제 58 조 1 항에 의거 이 기준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, 법 제 58 조 3 항에 의거 이 기준을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 이 기준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 (경과조치) 이 기준 시행 전에 결정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이 기준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.

제 3 조 (시행일) 이 기준은 2014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제 4 조 (시행일) 이 기준은 2016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.